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배포일시	2021. 6. 28.(월) / 총 5매(본문3, 참고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정희,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이호철 ·☎ (044) 201-4204, 4186, 4185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화전략처	담 당 자	·처장 김형신, 팀장 이용훈 ·☎ (032) 741-5424, 5244
한국공항공사	기획조정실	담 당 자	·실장 남창희, 부장 주현용, 차장 김현규 ·☎ (02) 2660-2241, 2531, 2532
보 도 일 시		2021. 6. 28(월) 16:00 이후 보도가능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 감면...총 1,803억 원의 감면 효과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존 주요 지원대책 >

- ◆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3.18)**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 착륙료(10~20%).정류료(100%).계류장사용료(20%) 감면
** 계류장사용료 감면을 상향(20→100%, 4.2)
-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4.23)** 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8월분, '20.9~'21.2월 납부)
- ◆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20.8.27)** 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 '21.6월, 4개월 연장)
- ◆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 '20.12.29)**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21.6월말),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6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1,223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604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총 1조 8천 5백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하여 왔다.
-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21.4월 기준, '19년 대비 97.6%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 * 입국금지 51개, 격리조치 9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118개 등 178개국 ('21.5.25기준)
 -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 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항공 여객실적(단위 : 천명, %)】

구분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21/'20(%)	'21/'19(%)
국제선	7,433	137	204	48.8%	△97.3%
국내선	2,870	1,887	3,114	65.0%	8.5%

- 이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연장 >

- 지난 12월 29일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20.3월~'21.6월)을 '21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 *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 이에 따라, '21.7월~12월까지(6개월) 약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	지원사항		당초	추가 연장	기대효과
감면	착륙료	10~20%	'20.3~'21.6월	'20.3~'21.12월	580억원 * 추가 감면 (누적) 1,223억 → 1,803억
	정류료	전액			
	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	전액			

-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4186),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용훈 팀장(☎ 032-741-2529), 한국공항공사 주현용 부장(☎ 02-2660-2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항공여객실적 추이 ('21년 1월~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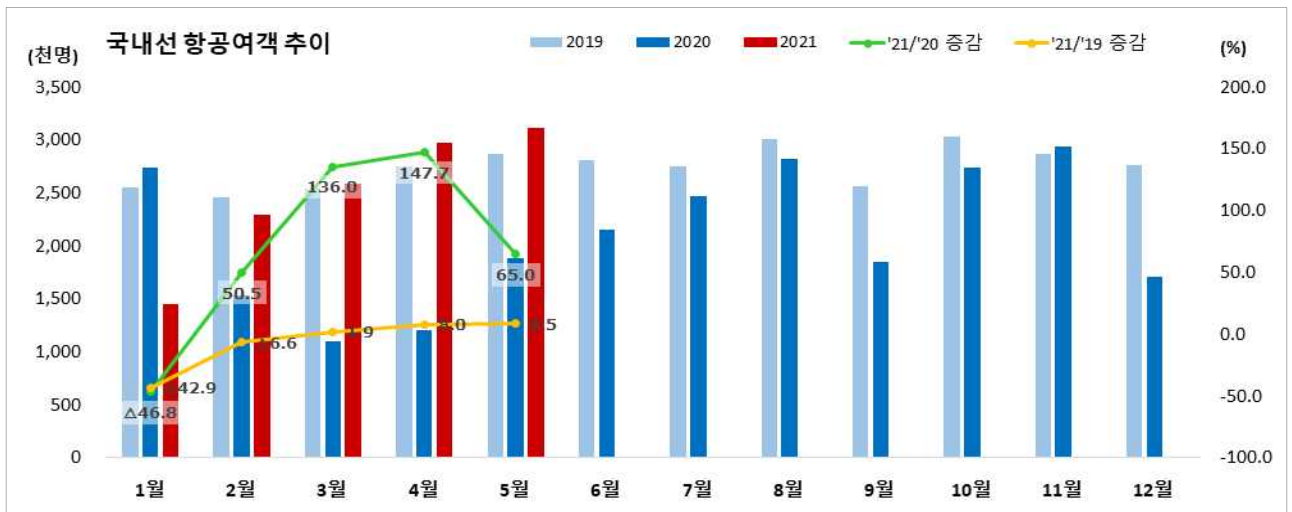
1 국제선 여객(단위 : 천명,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년	8,024	7,434	7,555	7,389	7,433	7,728	7,963	8,141	6,803	7,352	6,964	7,601
'20년	7,882	3,972	644	153	137	182	218	234	197	196	196	229
'21년	211	166	184	178	204							
'21/'20(%)	△97.3	△95.8	△71.4	16.2	48.8							
'21/'19(%)	△97.4	△97.8	△97.6	△97.6	△97.3							



2 국내선 여객(단위 : 천명,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년	2,552	2,463	2,542	2,754	2,870	2,815	2,748	3,010	2,561	3,030	2,872	2,764
'20년	2,739	1,529	1,098	1,201	1,887	2,161	2,469	2,827	1,848	2,747	2,943	1,715
'21년	1,458	2,301	2,591	2,974	3,114							
'21/'20(%)	△46.8	50.5	136.0	147.7	65.0							
'21/'19(%)	△42.9	△6.6	1.9	8.0	85							



참고 2

그간 지원대책

날짜	대책	내용	관련회의														
'20.2.17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① 공항시설사용료 최대 3개월간 납부유예 (3~5월) ② 상반기중 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③ 감면 항공편 운항 재개시 전월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20.2.28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업시설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인하 → 공항 25%인하 ② 매출연동의 경우 6개월간 납부유예 ·(대상) 항공사 ① 상반기중 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경제활력 대책회의														
'20.3.18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 II	·(대상) 항공사 ① 착륙료 감면(인천20%, 한국10%) 즉시시행(3~4월) * 추후 상항회복시 수요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 병행 ② 정류료 3개월 전액면제(3~5월) ③ 국제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사용료 20%감면(3~5월) ② 계류장사용료, 구내영업료 무이자 납부유예(3~5월)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업시설 ① 운항중단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대상) 상업시설(대·중견기업 포함 준 상업시설) ① 3개월 무이자 납부유예(3~5월)	위기관리 대책회의														
'20.4.1	코로나19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III	·(대상) 상업시설 ① 공항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상향(25~50%) ②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3~8월) ·(대상) 공항공사 ① 정부배당금 납입시기 조정(6개월 유예)	위기관리 대책회의														
'20.4.2	항공기 취급업 추가지원방안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사용료 감면을 상향(3개월 20%→100%) ② 급유시설임대료 납부유예(6개월)→감면(6개월 20%)	내부방침														
'20.4.23	코로나19대응 주요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대상) 항공사 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 사용료 감면 연장(3~5월→3~8월) ②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대상) 식음료 공급 등 연관업 ①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위기관리 대책회의														
'20.6.1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지원 방안	·(대상) 상업시설 ① 공항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상향(50~75%) ② 대·중견기업 임대료 감면을 상향(20~50%) ③ 납부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④ 임대료 체납 연체료 인하(연 8~15.6%→연 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8.27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8월→3~12월) 및 납부유예 연장('20.9~'21.2월→'21.1~6월)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 사용료 감면 연장(3~8월→3~12월) ②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20.9~'21.2월→'21.1~6월) ·(대상) 상업시설 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에 대해 여객감소율에 비례하여 감면(~'21.12월) ·(대상) 업무용시설 ① 국제선 여객터미널 항공사 라운지 및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21.12월)	비상경제 중장대책본부 회의														
'20.12.29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지상조업사 ①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21.6월 말까지 연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유형</th> <th>지원사항</th> <th>당초</th> <th>변경</th> <th>효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감면</td> <td>착륙료</td> <td>10~20%</td> <td rowspan="3">'20.3~'21.6월</td> <td rowspan="3">753억 → 1,210억 (457억 추가감면)</td> </tr> <tr> <td>정류료</td> <td>전액</td> </tr> <tr> <td>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td> <td>전액</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과	감면	착륙료	10~20%	'20.3~'21.6월	753억 → 1,210억 (457억 추가감면)	정류료	전액	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	전액	내부방침
유형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과													
감면	착륙료	10~20%	'20.3~'21.6월	753억 → 1,210억 (457억 추가감면)													
	정류료	전액															
	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	전액															